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10. 24 .
행정재무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0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0월 1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사항을 흡수, 보완
-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 동지가심의회 폐지
- 위원구성의 하한선 및 비전문가의 참여배제

나. 주요골자

-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를 “토지평가위원회” 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로 함.(안 제2조 제1항)
- 위원장은 “구청장” 에서 “부구청장” 으로 함.(안 제2조 제2항)
- 위원 위촉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 로 함.(안 제3조)
- 동지가심의회 위원의 의견청취 폐지함.(안 제8조)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96. 6. 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적법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구성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실운 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위촉위원의 자격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는데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여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지가심의회위원의 의견청취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은 적법한 조치이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96년 10월 9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
- 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사항을 흡수, 보완
- 다.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 라. 동지가심의회 폐지
- 마. 위원구성의 하한선 및 비전문가의 참여배제

2. 주요골자

- 가.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함.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2조 제1항)
- 다.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함.(안 제2조 제2항)
- 라. 위원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로 함.(안 제3조)
- 마. 동지사심의회 위원의 의견청취 폐지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1994. 3. 28)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 라. 조 례 안 : 별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중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포함하여 20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9인”을 “6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인”을 “8인”으로 한다.

제3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중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중 “동지가심의회 위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제1항(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9인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자 중 10인 이내</p> <p>제3조(위원위촉)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p> <p>제6조(회의 및 의결)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8조(의견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회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명 <u>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u></p> <p>제1조(목적)<u>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u>.....</p> <p>제2조제1항(구성).....<u>포함한 10인 이상 15인</u>..... ②.....<u>부구청장</u>..... ③..... 1.<u>6인</u>..... 2.<u>8인</u>.....</p> <p>제3조(위원위촉).....<u>자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및 의결).....<u>재적위원 과반수 출석</u>.....<u>출석위원 과반수 찬성</u>.....</p> <p>제8조(의견청취).....<u>(삭제)</u>.....</p>